



제335회 임시회

2014.10.14.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14년 10월 02일

○ 회부일자: 2014년 10월 07일

3. 제안이유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및 변경

(단위 : m², 천원)

기관명	구분	사 업 명	수 량	금 액
충청북도교육청	토지	가칭)석장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2,809	812,070
	건물	가칭)석장유치원 원사 신축	2,870	6,598,143
	토지	가칭)충주특수학교 설립부지 내 토지 취득	1,112	74,504
	건물	가칭)충주특수학교 교사 신축	5,872	14,198,669
합 계			12,663	21,683,386

① (가칭)석장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 신축

① 사업위치: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804-3

② 주요내용

- 사업목적: 혁신도시 유입하는 원아의 원활한 배치
- 사업용도: 공립 유치원 설립
- 사업기간: 2015. 1. ~ 2016. 8.
- 소요예산(총사업비): 7,410,213천원
 - 연도별소요액: 2015년도 7,410,213천원
 - 재원조달: 지방비 7,410,213천원
 - 재원별 사업비: 토지매입비 812,070천원(조성원가),
건축비 6,598,143천원
- 사업규모
 - 토지 2,809m², 건물 1동 2층 2,870m²
 - 주요(부대)시설: 교육실, 관리실, 유원장 등
- 기준가격: 토지 259,270천원(공시지가 92,300원/m), 건축비 6,598,143천원
- 계약방법: 토지 - 수의계약 / 건물 - 공개경쟁입찰

③ 취득사유: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유아 수용을 위한 단설유치원
설립 토지 매입 및 원사 신축

② (가칭)충주특수학교 설립부지 내 토지 취득 및 교사 신축

① 사업위치: 충주시 노은면 안락리 742-1외 3필지

② 주요내용

- 사업목적: 충주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다양한 특수교육기회 확대
와 원거리 통학학생 불편 해소를 위해 공립특수학교 신설
- 사업용도: 공립 특수학교 설립
- 사업기간: 2015. 1. ~ 2017. 2.
- 소요예산(총사업비): 14,273,173천원
 - 연도별소요액: 2015년도 2,914,504천원, 2016년도 11,358,669천원
 - 재원조달: 지방비 14,273,173천원
 - 재원별 사업비: 토지매입비 74,504천원, 건축비 14,198,669천원
- 사업규모

- 토지 16,367m²(매입 4필지 1,112m²), 건물 4층 5,872m²
- ※ 총 16,367m² 중 부지매입: 국(교육부) 964m², 국(국토부) 10m², 사유지 138m²
- 주요(부대)시설: 교과교실, 특별교실, 다목적실 등
- 기준가격: 토지 58,157천원(공시지가 52,300원/m), 건축비 14,198,669천원
- 계약방법: 토지 - 수의계약 / 건물 - 공개경쟁입찰
- ③ 취득사유: 공립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 부지 내 국·사유지 매입 및 교사 신축

5. 검토의견

본 관리계획안은 진천·음성혁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일원에 공동주택 등 3,500여 세대가 2018년까지 입주 예정인 바 유입원아 수용을 위한 단설유치원을 신설하고,

충주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다양한 교육기회 확대와 제천지역으로의 장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하여 충주지역에 공립 특수학교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① (가칭)석장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 신축은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804-3에 2016년 9월 개교를 목표로 2015년 1월부터 7,410,213천원을 들여 2,809m²의 부지에 건물 2,870m²를 취득하여 10학급 규모에 177명의 원아를 수용하려는 것으로 2011년 4월 28일에 자체 투융자심사에서 ‘적정’ 의견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② (가칭)충주특수학교 설립부지 내 토지 취득 및 교사 신축은 충주시 노은면 안락리 742-1외 3필지의 노은초 수상폐교에 201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2015년 1월부터 14,273,173천원을 들여 부지 내 국·사유지 4필지 1,112m²의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 5,872m²를 취득하여 14학급 규모에 77명의 충주지역 지적장애 학생을 수용하려는 것으로 2014년 7월 30일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적정’ 의견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계 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전문개정 2009.4.24]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림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